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시설 관리기준의 필요성 연구

신호준 · 구원희 · 백민호*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2008년 승례문 화재 이후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에 소화전, 방수총, 감지기, CCTV,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수많은 방재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아닌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159개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현장조사를 통하여 방재시설 실태를 알아보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소방시설의 관리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시설 현황 검토

현재 중요목조문화재에는 화재를 막기 위한 소방시설로 소화기,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속보설비, 감지기, CCTV 등 다양한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승례문 화재 이후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호스릴소화전, 방수총 등 다양한 설비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Table 1은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Status of Establish for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in Important Wooden Cultural Heritage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소화기	소화전	화재속보 (경보설비)	CCTV	
소방시설	지자체 (131)건	3,792개 (939개)	610기 (236기)	130식 (130식)	1,284대 (537대)	()는 당해 중요목조 문화재 ※ 속보설비 미설치 1건(승례문) - 해체보수 중
	공·농(20건)	1,454개	183기	20식	485대	
	합계(151건)	5,246개	793기	150식	1,769대	
전기설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5건	16건	14건	11건	9건	
방충사업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9동	39동	44동	8동	24동	
방염제포 도포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3,105동	148동	88동	18동	28동	
도난경보 시설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7개소	11개소	5개소	6개소	11개소	

출처 : 문화재청 업무통계자료(2012)

3.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시설 관리실태 분석

2012년 4월에서 11월까지 전국에 위치한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 소방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비교적 설치가 양호하고 잘 관리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으나

Figure 1과 같이 문제점이 발견된 곳도 있었다.

소화기의 경우 항상 적정 압력을 유지해야 하나 미달되어 화재 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있었으며 지정된 위치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게 사용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지하방수총의 경우 배수시설이 미비하여 침수되어 있거나 침수된 흔적이 있어 사용하기 어려운 곳도 존재하였다. 소화전의 경우 지정문화재와 너무 떨어져 있어 사용할 수 없었으며 소화전함이 빗줄로 묶여져 있어 소방호스, 관창 등을 꺼낼 수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감지기는 연등에 가려져 화재 및 연기를 감지하는데 오작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도 있었으며 CCTV를 촬영하는 곳이 커튼에 가려져 감시할 수가 없는 사례도 있었다. CCTV 모니터링 시설은 꺼져있거나 창고로 사용되는 곳에 설치되어 전담인원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소방펌프기계실은 바닥이 침수된 흔적이 있거나 나무합판으로 만들어져 화재, 습기로 인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Figure 1. Status of Management for Fire Protection System in Important Wooden Cultural Heritag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요목조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없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이처럼 현재 설치된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통해 각각의 시설의 관리기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며 새롭게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면적, 규격, 방사각, 지역적인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치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목조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문화재청의 연구용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문화재청(2012), 가칭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마련 연구보고서